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가단657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송명근

원고보조참가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민제, 마상미, 정원

피고1. C 주식회사

2. D

3. E

4.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변론 종결2021. 6. 8.

판결 선고2021.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2,293,084원과 그중 1,660,505,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조달청을 통해 경상남도로부터 공사기간이 200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인 건설공사(G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보조참가인은 원도급공사 중 일부인 '토공 및 배수 구조물 공사'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기로 하고, 2012. 5. 17. 피고 C과 대금 26,796,550,000원, 기간 2012. 5. 17.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3. 아래와 같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함), 원고가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가입금액(하도급공사금액의 6.7% 상당 계약보증금) 한도 내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그 지급보험금 상당 구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D, E, F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	C (주)	B (주)	금 1,795,368,850원	2012.05.17.-2013.12.31.
---	-------	-------	------------------	-------------------------

라. 피고 C은 2013. 12. 23. 보조참가인에게 계약(공사)포기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4. 2. 18. 피고 C에게 공사포기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5. 3.경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1,795,368,8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9. 1.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1,660,5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

피고 C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어 2014. 2. 1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전액은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계약보증금 중 일부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들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피고 C과 보조참가인의 타절정산합의 또는 계약변경합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기성고에 따른 계약보증금 정산을 하면 계약보증금 잔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보조참가인은 피고 C의 공사중단 이후에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 보전을 위한 공사이행보증금 상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을 통해 '피고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공정율과 관계없이 보조참가인에게 전액 귀속되고, 피고 C은 위약벌과 별도로 보조참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조참가인의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서 일반계약조건에서는 '피고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서(보증보험증권)상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인(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지급을 상대방(피고 C)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계약 문언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하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면, 보조참가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도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거나 보증인(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료 여부

1)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등 참조). 계약기간 중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갑 6호증, 갑나 2, 3, 10 ~ 1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은 '계약포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2013. 12. 23.자 문서에 '공사계약기간(2005. 5. 17. ~ 2013. 12. 31.)의 종기가 도래하여 귀사(보조참가인)가 2013. 12. 9.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당사(피고 C)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당사(피고 C) 자금사정으로 거래처 미불금 누적에 따른 채권가압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사수행이 불가하므로, 당사(피고 C)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첩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 ②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다수의 채권자가 피고 C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피고 C은 2013. 10. 17. 및 2013. 11. 18.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액계약을 요청하면서 그러한 감액계약이 피고 C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감액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④ 피고 C과 보조참가인은 2013. 12. 31.자로 공사정산(타절)을 하였고, 보조참가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갑나 4 ~ 7, 15, 16호증, 을 1 ~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권리포기 문서의 존재, 다수 채권자의 피고 C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C과 보조참가인이 계약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보조참가인이 경상남도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는 공사기간이 200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인 장기계속공사로서, 원도급업체인 보조참가인은 1년 단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세부 공정 및 공사금액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보조참가인과 발주자는 발주자의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공사기간 경과에 따른 물가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정보다 훨씬 늦은 2019년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보조참가인은 피고 C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2. 5. 17.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대금(계약금액)을 26,796,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도 원도급공사와 마찬가지로 발주자의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등 사정에 영향을 받아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보조참가인이 I 등을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시점은 예정보다 훨씬 늦은 2019. 3.경이었다.

다) 피고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 배정 등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대로 공정이 진행되지 못하여 보조참가인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등 피고 C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피고 C도 추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보조참가인의 추가 요청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등 서로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원래 공사기간 종기인 2013. 12. 31.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C은 보조참가인과의 계약종료 합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조참가인이 요청하는 대로 계약포기서면을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실제 기성고(4,089,365,968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준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서(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협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이 실제로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인정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보조참가인이 공사정산(타절) 당시까지 피고 C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정이 지체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피고 C이나 발주자에게 제시한 적도 없다.

마) 보조참가인은 피고 C과 공사정산(타절)을 한 후에 1 등을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문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원래 예정보다 훨씬 늦은 2019. 3.경 완료되었고 원도급공사도 원래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발주자는 보조참가인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그 이유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정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어 보조참가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을 몰취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종열